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1. . .
발 의 자	이지연 의원 외 7명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지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1. . .

발 의 자 : 이지연 · 김낙관 · 김영길 · 신문식
이선우 · 장미경 · 장세구 · 홍난이
의원(8인)

1. 제안이유

가.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의 체계적인 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기간, 입장료,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 마련

2. 주요내용

- 가. 파크골프장의 목적, 정의, 명칭과 위치(안 제1조~제3조)
나.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다.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마. 사용허가 제한 등,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관리운영의 위탁, 수탁자의 의무 및 행위의 금지, 감사, 위탁계약의
해지(안 제12조~제16조)
아. 개방제한 및 휴관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제18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다. 기 타 : 조례안 예고(2021. 4. 8. ~ 4. 22.)결과 의견없음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이하 “파크골프장”이라 한다)이란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파크골프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공휴일”이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4. “체육행사”라 함은 공인체육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와 체육관련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시장이 관리·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파크골프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파크골프장 내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 또는 단체가 사용(연습사용 포함)하려는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④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시의 국·경조 행사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와 행사
3. 직장인이나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4.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6. 그 밖의 경기 및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이용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7조(사용료 등)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의 부과 징수와 이의신청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2. 구미시체육회의 체육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14.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제9조(사용허가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사용료 미납액이 있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의 거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체육시설 내의 흡연자 및 만취자

3.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4. 상품판매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한 행위를 하는 사람

5. 유아, 어린이 등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 없이 입장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입장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10조(사용허가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가 있으면 이미 사용 허가한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전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제3자의 행위라 할지라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④ 변상금은 현금, 그 밖에 기탁된 유가증권이나 물건으로 갈음하여 변상케 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그 귀책사유로 시설물이 손상되거나 쓰레기 기타 폐기물로 인해 오염되었을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원상복구가 필요할 경우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파크골프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

하여 파크골프장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단 또는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③ 파크골프장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이용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이용시설의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 수탁재산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이용시설 개·보수 등 유지·관리와 손·망실에 관하여 책임지고

변상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위탁시설을 변경하거나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자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5조(감사 등) ① 수탁자는 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운영능력이 없거나 이용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했을 경우

제1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나 경상북도 또는 시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보수를 하는 경우
3. 시설 이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휴관) ① 파크골프장은 시설점검 등을 위하여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휴일에는 휴관 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 시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표3에 따라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9조(준용규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낙동강 파크골프장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구미파크골프장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1123번지 낙동강 둔치 일원
동락파크골프장	구미시 진평동 947-31번지 낙동강 둔치 일원
양호파크골프장	구미시 양호동 607-2번지 낙동강 둔치 일원
고아파크골프장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695-1번지 낙동강 둔치 일원
선산파크골프장	구미시 선산읍 원리 1057-26번지 낙동강 둔치 일원
해평파크골프장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1095-34번지 낙동강 둔치 일원
도개파크골프장	구미시 도개면 궁기리 829-1번지 낙동강 둔치 일원

[별표 2]

낙동강 파크골프장 이용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구 분	기 준	정상요금(원)				비 고
		개 인	단 체	월 회비	연 회비	
평 일	36홀(18홀2회) (1인당 3시간)	8,000	6,000	60,000	300,000	구미시민 50% 감경
토·일, 공휴일		10,000	8,000			

가. 구미시민이라 함은 사용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거 구미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나. 단체란 20명 이상으로써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라. 제8조에 의거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단, 월회비, 연회비는 감면 적용 제외한다.

마. 경기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정산 반환하지 아니한다.

[별표 3]

낙동강 파크골프장 휴관 기준(제18조 관련)

명칭	휴관
구미파크골프장	매주 월요일
동락파크골프장	매주 화요일
양호파크골프장	매주 수요일
고아파크골프장	매주 목요일
선산파크골프장	매주 금요일
해평파크골프장	매주 토요일
도개파크골프장	매주 일요일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 ⑤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⑦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 ③ 생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

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전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육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한다.

②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
2.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

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

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

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

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

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이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

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 하여 감경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생략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2022년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유료화 운영 예정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세입·세출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파크골프장 운영비 및 사용료에 근거하여 세입·세출 등을 기초로 함

■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

낙동강 파크골프장 이용시설 사용료(7조 관련)

구 분	기 준	정상요금(원)				비 고
		개인	단체	월회비	연회비	
평일	36홀(18홀2회)	8,000	6,000	60,000	300,000	구미시민 50% 감경
토·일, 공휴일	(1인당 3시간)	10,000	8,000			

가. 구미시민이라 함은 사용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거 구미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나. 단체란 20명 이상으로써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라. 제8조에 의거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단, 월회비, 연회비는 감면 적용 제외한다.

마. 경기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정산 반환하지 아니한다.

- 운영비는 구미시 예산편성 운영단가를 적용하며, 최근 5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1.1%)을 매년 적용한다.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사용료	752,400	752,400	752,400	752,400	752,400	3,762,000
	소계(a)	752,400	752,400	752,400	752,400	752,400	3,762,000
세출	○ 운영비	1,400,000	1,415,400	1,430,970	1,446,710	1,462,624	7,155,704
	소계(b)	1,400,000	1,415,400	1,430,970	1,446,710	1,462,624	7,155,704
□ 총 비용(a-b)		-647,600	-663,000	-678,570	-694,310	-710,224	-3,393,704

- 세입(사용료)의 경우 관외자 비율10%(감면요금5%(제8조), 정상요금5%), 관내자 비율90%(감면요금45%(제8조), 정상요금45%) 적용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도 비							
시 비		647,600	663,000	678,570	694,310	710,224	3,393,704
민 간							
기 타							
합 계		647,600	663,000	678,570	694,310	710,224	3,393,704

5. 부대의견 : 세입(파크골프장 사용료) 및 세출(파크골프장 운영비)

예산은 추정비로써, 여건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건설수변과 이홍명
연락처	054-480-538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소요예산 판단

구 분	지구	홀	면 적 (만m ²)	소요 인원	인건비/년 (천 원)	금 액 (천 원)	비고
총 계	7	243	약28만	40		1,400,000	
요금수납 및 안전지도	합 계			13		390,000	
	구미	63	7.2만	3	30,000	90,000	잔디 휴지기 제외
	선산	36	4.3만	2	30,000	60,000	
	도개	36	4.0만	2	30,000	60,000	
	고아	36	3.1만	2	30,000	60,000	
	동락	36	5.5만	2	30,000	60,000	
	해평	18	2.3만	1	30,000	30,000	
	양포	18	1.9만	1	30,000	30,000	
화장실 청소 및 환경정비	파크골프장 7개소			7	30,000	210,000	잔디 휴지기 제외
잔디관리 (예초, 제초, 관수 등) ※ 1명/1.5만m ²	합 파크골프장 7개소			20	21,000	420,000	4월~10월
일 반 운 영 비 (전기료, 소모품 등)						80,000	
전 체 보 수 비 (배토, 관정, 시설보수 등)						300,000	

2. 예상수익 검토

- 예상이용객 : 하루 평균 760명 × 10개월 = 228천명
※ 3~4월 잔디 생육기 휴지기 제외
- 관외자 비율 10%(감면요금 5%(제8조), 정상요금 5%)
관내자 비율 90%(감면요금 45%(제8조), 정상요금 45%) 적용

$$= (228\text{천명} \times 4,000\text{원} \times 5\% + 228\text{천명} \times 8,000\text{원} \times 5\%) + \\ (228\text{천명} \times 2,000\text{원} \times 45\% + 228\text{천명} \times 4,000\text{원} \times 45\%) = 752\text{백만원}$$